

[공모펀드 변경안내]

- 가. 펀드명 : 유진G-BEST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- 나. 변경시행일 : 2021년 1월 12일(화)
- 다. 변경 대상 서류 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
- 라. 주요 변경 내용 :
- 1) 펀드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 - 2) 투자위험등급 변경(3등급 → 2등급)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 설>	1) 펀드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2) 투자위험등급 변경(3등급 → 2등급)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, “가.투자대상”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①(생략) 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~(생략)~ <u>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</u> ③~⑭(생략)	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- 유진챔피언배당주증권모투자신탁(주식) ①(현행과 같음) ②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~(생략)~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③~⑭(현행과 같음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, “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”	투자위험등급: <u>3등급(다소높은위험)</u> 수익률 변동성 : <u>13.1783%</u>	투자위험등급 : <u>2등급(높은위험)</u> 수익률 변동성 : <u>20.8204%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“가.이익 배분”, “(2)상환금 등의	-(생략)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	-(현행과 같음)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

지급”	는 <u>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	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판매 현황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(세전 기준)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, “다. 최근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” 및 “라. 운용자산규모”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투자비용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투자실적추이 (연평균수익률)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운용전문인력	-	<u>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</u>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9조(수익권의 분할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 ②(생략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<u>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</u> ②(현행과 같음)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</u> 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~③ (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<u>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</u> 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이라 한다)」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)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에 위탁하여야 한다.	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「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6호에 따른 <u>전자등록기관</u> (이하 “전자등록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

	<p>②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</p> <p>⑦⑧ (생략)</p>	<p>② 집합투자업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서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<u>전자등록기관</u>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<u>전자등록기관</u>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<u>전자등록기관</u>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⑦⑧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자산운용지시 등)</p>	<p>①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④(생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·처분 등을 한 경우 <u>그 투자신탁재산으로 한도</u>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5조(상환금등의 지급)</p>	<p>①~②(생략)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①~③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①~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39조와는 별도로 제5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</p> <p>2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</p>

		<p>⑤ 제4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p> <p>1. 대상금액: 제39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(법률자문료 등)</p> <p>2. 대상기간: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. 단,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 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.</p> <p>⑥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는 제5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(제37조 제4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<p>제45조(집합투자기구의 해지)</p>	<p>①~②(생략)</p> <p>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<u>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(생략)</p>	<p>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49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9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</p>	<p>① 1 ~ 2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① 1 ~ 2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다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p>	<p>①~⑧(생략)</p> <p>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(이하생략)</p> <p>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</p>	<p>①~⑧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<u>직접, 전자우편의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</u>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(이하생략)</p> <p>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</p>

	(이하 생략)	(이하 생략)
제52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 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 "~(이하 생략)	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" 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 "~(이하 현행과 같음)